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중 “주민의 복리증진과 ”를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경영방식에 의한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토록 할 수 있다.

제9조 중 “상하수도 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등)에”를 “상하수도사업과 댐주변사업,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등) 농촌도로사업에”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중 “상·하수도 사업”을 “상·하수도 사업 및 댐 주변사업”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중 “보건과장다음에 “농업정책과장”을 삽입하고 “도시개발과장” 다음에 “도로과장”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94. 7. 11

제안자 김제근의원의 4인

□ 수정이유

- 용자금의 이율을 3%~10%로 할 경우 폭이 넓어 시·군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채상환 이율이 년 6% 복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이율이 공채상환이율 보다는 높게 책정 되어야 하겠으며 이율이 6%이하로 운용될 경우 기금의 잠식을 가져올 염려가 있어 기금의 증대를 기하고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임.

□ 수정 주요 골자

- 용자대상 사업주체의 재정상태 용자사업의 공공성, 수익성등을 고려하여 3%~10% 범위내에서를 삭제(안 제10조 제1항) 하고
- 사업수입으로 부채이자 및 원금 상환이 곤란한 재정취약 단체에 대하여는 6.5%~7%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현행대로 함(안 제10조 제1항 제1호)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제1항중 "필요한 경우 용자대상 사업주체의 재정상태 용자사업의 공공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3%~10%범위내에서"를 삭제하고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도지사가 결정한다."로 하며

동조 제1항 제1호중 : "년리 7% 다음에 다만 사업수입으로 부채이자 및 원금상환이 곤란한 재정취약 단체에 대하여는 6.5%~7%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를 추가함.